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 적용 배제 대상에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조건 추가〉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07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2.
3. 회 부 일 : 2025.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개설하여 현행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호 단서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대하여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곳은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도록 적용 배제의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4조제1호 단서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적용 배제) ----- -----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단서 신설>	1. ----- ----- ----- ----- ----. <u>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총매출액 대비 농수산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제외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u>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 , <u>농수산물</u>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제1호¹⁾ 및 「농안법」 제3조²⁾에 따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농수산물도매시장등”)에 대하여는 「유통산

- 1)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민 보호 및 농수산물 판로확보 등을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은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지역
협력계획서 제출³⁾이나 영업시간 규제⁴⁾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각종

-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⑦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 의견에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규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농안법」상 농수산물도매시장등 유형

	구분	기능	법정 설치주체	관련 허가 등	예시	개수
1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2조제2호)	농수산물의 도매	<u>지방자치단체</u> (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 특 별자치도 또는 시)	‘시(市)’가 지방도매시장 개설 시 도지사 허가 필요	서울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서울특별시)	45
2	농수산물 공판장 (제2조제5호)	농수산물의 도매	<u>농협, 수협,</u> 산림조합, 생산자단체, aT	개설 시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	농협 가락공판장 (농협)	79
3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제2조제6호)	농수산물의 도매	<u>민간인등</u>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자)	개설 시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안양시 민영축산물 도매시장 [(주)협신식품]	3
4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제2조제12호)	농수산물의 수집·포장· 가공·보관· 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물류활동	① <u>국가, 지방자치 단체</u> ② <u>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받은 자</u>	없음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 원 없이는 민간 이 설치 불가)	양재 농산물종합 유통센터 (농협)	15

자료: 22126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부문에서 개설·설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등에 대하여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만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등에서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도 의무휴업일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일률적으

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⁵⁾, 농민 및 농수산물 유통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설치하지 아니한 곳만 적용하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등 중에서 ① 농수산물공판장, ②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③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만 대상이 되고,

이 중 농산물공판장(농협가락공판장, 양재 aT 화훼공판장 등)과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안양민영축산물도매시장 등)은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과 무관하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전국에 15개소가 있는데, 이 중 9개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실질적으로 개정안의 적용이 되는 민간 설치 시설은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포함한 6개소임.

이와 같이 민간 설치 6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중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산물 취급 비율이 55%에 미달하는 곳은 2024년 기준으로 1개소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환경신문, “하나로마트, 농산물 많이 팔라고 의무휴업도 빼줬는데...”, 2022.8.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 중인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의 61.2%는 농수산물 판매 목표치 55%에 미달하고 있지만, 의무휴업일 적용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안법」 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연번	소재지	사업(설치)주체		운영주체	농산물비율 (’24, %)	개장일
1	서울 서초(양재)	민간	농협유통	농협유통	62.3	1998.1.15.
2	서울 도봉(창동)		농협유통	농협유통	58.3	1998.5.1.
3	충북 청주		농협충북유통	농협충북유통	57.6	1998.10.28.
4	전북 전주		농협유통	농협유통	56.2	1999.12.18.
5	대구 군위		농협하나로유통	농협하나로유통	<u>44.6</u>	2001.1.12.
6	대전 중구		농협대전유통	농협대전유통	75.2	2002.3.29.
7	경기 성남	지자체	성남시	농협하나로유통	67.0	2000.8.30.
8	경기 고양		고양시	농협하나로유통	59.6	2001.6.8.
9	대구 달성		달성군	농협하나로유통	48.0	2003.6.20.
10	전남 목포		목포시	농협하나로유통	56.0	2003.8.22.
11	경기 수원		수원시	농협하나로유통	(’23) 58.7	2003.10.10.
12	경남 김해		경상남도	농협하나로유통	53.8	2005.11.25.
13	충남 금산		금산군	휴온스네이처	(’23) 2.4	2006.8.3.
14	울산 북구		울산시	농협하나로유통	56.1	2009.5.29.
15	경남 양산		양산시	우리마트	61.1	2011.12.1.

주: 13번(충북 금산)의 경우 인삼 ‘가공품’을 주로 유통하므로 농산물 취급 비율이 매우 낮게 조사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안법」 상 15개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2024년 기준 농산물 취급 비율이 50%~60%인 곳이 7개소이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설한 곳을 제외한 민간이 설치한 곳으로 한정시에도 6개소 중 3개소가 55%~60%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은 매년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개설등록과 관련하여서 매출액이 기준을 충족하다가 미달한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반대로 매출액이 미달되다가 충족하게 된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가 불명확하고,

매년 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농수산물 매출액이 55% 내외에서 변동하는 경우, 의무휴업 여부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에게 혼동 및 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농수산물도매시장등에서의 농수산물 유통은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 이익 및 국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농안법」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부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실제 운영상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게 되면 「농안법」 취지인 농수산물 유통활성 및 농민 소득 증대 훼손의 소지가 크므로 개정안에 찬성하고, 영업규제에서 제외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기준을 70%로 상향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향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감안하여 개정안의 심사 및 조정이 필요할 것임(참고자료).

문 의 처
02)6788-54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212608호)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총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제외한다.